

규제심사 절차

□ ‘신설·강화’ 안전 규제심사 절차

○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(사전검토서, 개정안 전문, 내부보고서 첨부)

-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→ **규제영향분석서 작성**
(규제정보화시스템의 e-규제영향분석시스템 활용)
*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규제비용분석 포함
- **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안전 등록**(규제정보화시스템)

⇒ ○ 위원회 보고 ⇒

○ 입법예고·행정예고
(반드시 **규제영향분석서**
함께 게시)

⇒

○ **확인증 발급**
(규제심사대상 아닌 경우
규제심사절차 종료)

⇒

○ 표준형RIA인 경우 →
비용분석 검증 신청
(규제정보화시스템)
- 필요시 비용분석위원회
심의

⇒

○ **부처 자체심사**
(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)

⇒

○ **규개위 예비심사**
(중요규제 여부 판단)

⇒

중요규제

⇒

본회의상정(심사·의결)

⇒

심사종결
(심사종결 확인증 발급)

↓

비중요규제

⇒

심사종결
(심사종결 확인증 발급)

⇒

규제 등록
(규제정보화시스템)

※ 규제비용관리제 대상(표준형 RIA) : 비용분석 필요(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하여 작성)

※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5조제2항에 의거 훈령, 예규, 고시 등 행정규칙안은 행정예고(20일간)
및 법제처 검토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

⇒ 규제심사 이후 법령안 내용 변경 시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실과 재협의

□ ‘폐지·완화’ 안전 규제심사 절차

○ **규제심사 대상여부확인**
- 규제심사 대상여부 안전등록(규제정보화시스템)

⇒

○ **위원회 보고**

⇒

○ **규제비용분석서 작성**
(규제정보화시스템의
e-규제영향분석시스템 활용)

⇒

○ 입법예고·행정예고

⇒

○ **확인증 발급**

⇒

○ **비용분석 검증 신청**
(규제정보화시스템)
- 필요시 비용분석위원회
심의

⇒

○ **규제편의적립**

※ 폐지·완화 안전의 경우, 그 편익을 적립하여 신설·강화 규제에 의한 규제준비용 발생 시 규제비용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